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33
----------	-------

발의연월일 : 2025. 9. 19.

발 의 자 : 이연희 · 박정현 · 장종태
김정호 · 송재봉 · 임미애
강준현 · 정준호 · 박 정
염태영 · 조계원 · 홍기원
김남희 · 박상혁 · 신영대
이광희 · 김기표 · 정태호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지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및 주차장을 찾기 위한 배회운전 등은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도시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 신규 주차장 보급, 불법 주·정차단속,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도권외의 경우 특히 차량 대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운 실정임. 주차장을 찾기 위하여 도심을 배회하는 차량이라도 줄여보고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영 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에 한정하여 부

분적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고 있기에 최종 이용자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연계 및 전문 기관 위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도심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등).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의5에 따른 주차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4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에”를 “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주차정보 제공에”로 한다.

4. 제21조의5에 따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계에 관한 사항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에 한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 정보망을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국민과 주차 정보 제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주차장 이용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u> <u>제21조의5에 따른 주차정보시</u> <u>스템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u> <u>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u> <u>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u> <u>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정</u> <u>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u> <u>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 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 운영)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1조의5에 따른 주차정보</u> <u>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계에</u> <u>관한 사항</u>
4. (생 략) ②·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지
능형교통체계협회(제1항제4호
에 따른 업무에 한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
정보망을 통하여 수집하는 정
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국민과 주차정보 제공을 업(業)
으로 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
-----운영 및 제
5항에 따른 주차정보 제공에--

<u><신 설></u>	<u>제21조의5(주차정보시스템 구축</u> <u>· 운영 등) 특별시장·광역시</u> <u>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u> <u>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u> <u>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u> <u>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u> <u>에 따라 실시간 주차장 이용현</u> <u>황 등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정</u> <u>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u> <u>있다.</u>
---------------------------	---